



서울 행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97 해임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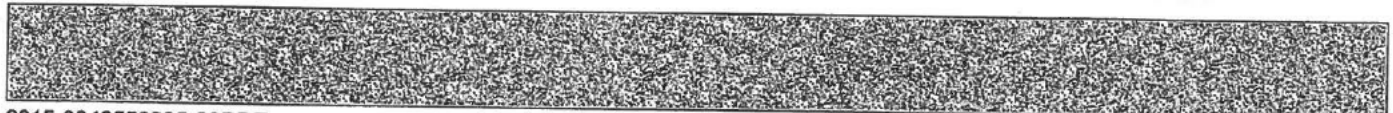
[Redacted]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사이의 2014-472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은 승덕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3월경 위 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승덕학교 교장 임 [REDACTED]는 2014. 7.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승덕학교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8. 8. 원고가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2014. 9.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2014. 9. 1.자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위 징계사유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의 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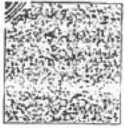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이루어졌다.

(나)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면권자인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이 아닌 승덕학교 교장이 한 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

(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에도(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원고에게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한 바가 없다.

(라) 승덕학교 교직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시 출석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출석이유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승덕학교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8.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면서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징계위원회에 출석 혐의내용 진술'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바) 사립학교법 제66조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유 기재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적법한 징계처분 사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바) 송덕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2014. 9.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송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금지에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같은 학교의 동료교사인 이 [] 과 7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현재의 처와 결혼한 것은 사실이나, 이 [] 과는 정상적인 남녀관계로 교제 및 혼전 성관계를 한 것 이지 혼인을 빙자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심각한 품위손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 과의 관계에서 혼인을 빙자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특별한 문제가 없이 9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가) 이사회 의 심의·의결 부존재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면권자인 학



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의 장의 제청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은 2014. 6. 23.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기타 보고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보고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의나 의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직접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보고사항으로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징계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6. 23.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한 반면,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보고만 하였을 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더욱이 위 보고사항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대한 것으로,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이사들이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해임 징계의결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면권자 아닌 사람이 한 징계의결요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당해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이고(사립학교법 제64조), 학교장이 아닌 교원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권자로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송덕학교 교장 임[redacted]가 2014. 7.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는 사회복지법인 송덕원이므로 임면권자가 아닌 교장이 한 징계의결 요구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 요구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서 미송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 설명서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덕학교 교장 임■■■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은 사실, 송덕학원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14. 8. 8. 개최된 사실, 원고는 2014. 2. 12. 휴직원을 제출하고 2014. 3. 1. 부터 2014. 8. 31.까지 휴직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사유 설명서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시 징계사유 미통지

징계협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협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 이의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출석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서도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송부 외에 출석통지시 징계사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징계규칙에서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석통지서상의 출석이유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㉕) 징계처분사유 미통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이 2014. 8. 13.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이유에는 '위 사람은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금번 사건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당부분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은 물론 동료 교사와 장애인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이유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징계이유로 삼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배) 권고사직금지에 위반한 조건부 징계

승덕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2014. 9.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원고가 원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임처분으로 볼 것이고, 징계권자가 해임처분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의원면직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법령이 정한 징계 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6. 3월 승덕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이후 2006. 10월경부터 동료교사인 이 ■■■ 과 교체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깊은 관계를 가진 사실, ② 원고는 부모가 이 ■■■ 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2013. 8월경 현재의 처인 신 ■■■ 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체를 하게 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신 ■■■ 와 교체를 하는 기간 중에도 이 ■■■ 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2014. 1. 11. 신 ■■■ 와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 과의 성관계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한 사실, ④ 원고가 신 ■■■ 와 결혼을 한 이후 이 ■■■ 이 학교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원고의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학교의 교장 및 교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4. 2. 12. 휴직원을 제출하고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 휴직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3. 4. 승덕학교의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음날



인 2014. 3. 5.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7년 이상 동료교사 이[]과 이성교제를 하던 중 신[]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음에도 이[]과 결별하지 않고 상당기간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는 징계처분 사유에 기재된 내용 중 '원고가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금번 사건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동료교사와 장애인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용은 원고의 품위손상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증거들과 이 법원의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의 징계처분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의 품위손상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6. 10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이 ■■■과 장기간 교제하면서, 비록 부모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 ■■■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등 진지하게 교제하 였던 것으로 보이고, 혼인을 빙자하여 이 ■■■과 간음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2013. 8월 이후 신 ■■■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도 이 ■■■과 헤어지지 않고 상당기간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복수의 여성과 무 분별하게 이성교제를 하였다기보다는 7년 이상 교제한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redacted]은 원고와 함께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되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⑤ 원고는 2006. 3월 승덕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이후 9년 동안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u>조한창</u> 
	판사	이도행	<u>이도행</u> 
	판사	김정철	<u>김정철</u>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2015. 3.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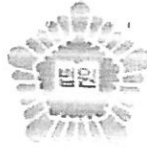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명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정보입니다.

2015. 5. 28.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방극동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보를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